세무사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22.] [기획재정부령 제1046호, 2024. 3. 22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조세법령운용팀) 044-215-4154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세무사법」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2. 21.>

[전문개정 2000. 8. 30.]

- 제2조(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「세무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2. 26., 2000. 8. 30., 2005. 2. 21.>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
 - 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

을 기재해야 한다.<개정 2000. 8. 30., 2021. 10. 28.>

- 2. 출석위원의 성명
- 3.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4. 의결사항
- **제2조의2(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)** 「세무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2005. 2. 21.> [본조신설 2000. 8. 30.]
- 제3조(응시원서)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(이하 "시험시행기관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21., 2017. 3. 10.>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**제4조(응시수수료)** 영 제6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1998. 2. 2., 2000. 2. 26., 2009. 4. 21., 2023. 7. 4.>
 - 1. 제1차 시험: 3만원
 - 2. 제2차 시험: 3만원
- 제5조(응시원서의 접수)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 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4. 21.>
 - ② 삭제<2009. 4. 21.>
 -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00. 8. 30., 2009. 4. 21.>
- 제6조(합격자명부등)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2. 2., 2000. 2. 26., 2000. 8. 30., 2009. 4. 21.>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, 그 사실을 제 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.<개정 2009. 4. 21.>
- **제7조(세무사자격증의 교부)**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 3. 25., 1998. 2. 2., 2000. 2. 26., 2000. 8. 30.>

- 1. 삭제 < 1994. 3. 25.>
- 2. 삭제 < 2000. 8. 30.>
- 3. 공인회계사

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

4. 변호사

변호사등록증명서 1부

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.<개정 1998. 2. 2., 2000. 2. 26., 2009. 4. 21.>

제8조(세무사등록)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 3. 25., 1998. 2. 2., 2000. 2. 26., 2000. 8. 30., 2004. 4. 10., 2011. 6. 30., 2017. 3. 10., 2019. 3. 20.>

- 1. 삭제 < 1994. 3. 25.>
- 2. 이력서 1부
- 3.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(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)
- 4. 사진(3.5cm × 4.5cm) 2장
-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.<개정 2019. 3. 20.>

제9조(세무사등록의 갱신)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2. 2., 2000. 2. 26., 2000. 8. 30., 2011. 6. 30., 2017. 3. 10.>

- 1. 세무사등록증
- 2. 삭제 <1994. 3. 25.>
- 3.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
- 4. 사진(3.5cm × 4.5cm) 1장

제10조(세무사등록부)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
- 2. 학력 및 경력
- 3.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
- 4. 그 밖의 사항
-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.

[전문개정 2019. 3. 20.]

제11조(등록사항변경신고)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.

- **제12조(세무사의 실무교육)**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(이하 "실무교육"이라 한다)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. <개정 2017. 3. 10.>
 -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. 다만,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 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.
 -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<개정 2017. 3. 10.>
 -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10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10.>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.
-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10.>

[전문개정 2004. 4. 10.]

제13조(업무실적 내역서)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9. 3. 20.]

제13조의2(세무법인등록신청서)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. <개 정 2019. 3. 20., 2024. 3. 22.> [본조신설 2003. 3. 5.]

제13조의3(세무법인등록부 등)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. <개정 2019. 3. 20., 2024. 3. 22.>

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.<개정 2019. 3. 20., 2024. 3. 22.> [본조신설 2003. 3. 5.]

- 제13조의4(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)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10,, 2019. 3. 20.>
 - 1.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
 - 2.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
[본조신설 2003. 3. 5.]

- 제13조의5(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)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7. 5., 2009. 4. 21., 2010. 7. 23., 2019. 3. 20.>
 - 1. 신 구정관 각 1부
 - 2. 삭제 < 2006. 7. 5.>
 - 3.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

[본조신설 2003. 3. 5.]

제14조(징계요구)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,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,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1998. 2. 2., 2000. 2. 26., 2009. 4. 21., 2010. 7. 23., 2017. 3. 10., 2024. 3. 22.>

제15조 삭제 <2012. 3. 9.>

제16조(징계의결의 통보)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.

제17조(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)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여야 한다.

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7조의2(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)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.
 -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7조의3(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)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10.>
 - 1. 이력서 1부
 - 2. 사진(3.5cm × 4.5cm) 2장
 -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제17조의4(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)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 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7. 3. 10.>

- 1.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
- 2.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
- 3. 사진(반명함판) 1매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**제17조의5(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)** 영 제30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9서식과 같다 [본조신설 2011. 6. 30.]
- **제17조의6(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)** 영 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7조의7(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)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.
 -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- 제17조의8(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)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.
 -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제17조의9(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) 영 제30조의11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14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11. 6. 30.]

제18조 삭제 <2017. 3. 10.>

제19조(세무대리업무등록 등)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세무사등록"은 "세무대리업무등록"으로, "세무사등록신청서"는 "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"로, "한국세무사회의 장"은 "국세청장"으로, "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"는 "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"로, "세무사등록부"는 "세무대리업무등록부"로, "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"는 "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"로 본다. <개정 2011. 6. 30., 2017. 3. 10.>

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. [본조신설 2004. 4. 10.]

제20조 삭제 <2020. 4. 7.>

부칙 <제1046호,2024. 3. 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